

#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64호

##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6월 13일

### 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4. 6. 13. ~ 2024. 6. 26.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한현근	1988.○.22.	0178220274100002631	₩4,492,500	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115 번길
2	고재관	1964.○.29.	0178220274100003689	₩21,132,000	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인로 5 길
3	이호	1974.○.14.	0178200274100007506	₩30,564,000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신로
4	정용운	1978.○.20.	0178230274100002342	₩12,160,800	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97 번길
5	김철현	1981.○.10.	0178230274100000202	₩682,800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척동 3 길
6	허종만	1973.○.14.	0178200274100007517	₩22,302,000	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대산 3 길
7	이방수	1964.○.23.	0178230274100000065	₩29,916,000	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로 71
8	제주투어주식회사	220111- 0090159	0178230274100000184	₩2,721,600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
9	여인덕	1952.○.02.	0178200274100007509	₩31,644,000	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두곳 7 길
10	송승운	1983.○.14.	0178240274100001410	₩300,000	서울특별시 강남구 뽕은사로 48 길
11	(주)크레딧컴퍼니	210111- 0140740	0178200274100007600	₩5,685,000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1
12	채현구	1993.○.05.	0178230274100000944	₩11,140,440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구룡 1 길
13	이후정	1989.○.30.	0178230274100000209	₩3,207,120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황강서원 2 길
14	방인욱	1974.○.27.	0178210274100003322	₩10,620,000	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
15	(주)유엔아이디엔씨	200111- 0528170	0178230274100000207	₩4,672,500	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로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(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☎062-457-1595,1596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